

의안번호	2218305
의 퇴 인	송옥주의원
회 답 일	2026.8.24.
추계번호	26B2170
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 (질병관리등급의 부여)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나 마을을 상대로 소독 등 가축질병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(제2항)	재량규정
	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·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방역 및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방역시설·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·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 (제3항)	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질병관리 등급 등 세부 기준 및 필요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8조 (질병관리등급의 부여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수준이 우수한 농가·마을 또는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장·지역에 대하여 소독, 방역시설·도구 구입 및 가축질병 관리·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「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」 사업을 통해 농장의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농장에 방역물품 등 경제적 인센티브

를 제공하는 등 질병관리(방역) 수준이 우수한 축산농장을 지원하고 있으며,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6년 기준 1억 7,000만원임(참고자료 참조)

- 또한, 「가축질병 컨설팅·모니터링」 사업을 통해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(가축질병 및 사양관리, 방역시설 개선 등)을 지원하고 있으며, 대상 축종별 관련 예산 현황은 아래 [표 1]과 같음

[표 1] 가축질병 컨설팅·모니터링 사업 예산 현황

(단위: 국비, 백만원)

세부사업명	내역사업명	대상 축종	'24 예산	'25 예산	'26 예산
가축방역대응 지원 (3940-335)	가축질병 컨설팅·모니터링	돼지	1,573	1,573	1,573
		가금	2,500	2,500	2,350
		양봉	800	700	42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의견에 따르면, 방역·사육환경 위생관리 실태 평가 및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대한 시설·도구 구입비용 지원 등의 사업은 현재 부재하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위생 실태 평가에 필요한 농가당 평가 단가, 평가 인력의 규모, 평가횟수 및 방역시설·도구의 종류, 물량, 단가 등 추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고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평가 및 방역시설·도구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 개요

(자료: 농림축산식품부)

□ (제도 개념) 방역 요소별 시설 및 관리 수준 등을 지수·등급화한 농장 평가시스템(1~4등급) 구축(질병 관리수준 등급부여 제도)

○ 우수농장(1~2등급)에게 정책사업 우선 지원, 예방적살처분 제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방역 수준 상향 유도

(사업) 사료 자금, 보험 가입비, 시설지원, 백신 지원 보조율 상향 또는 우선지원 등

(방역 조치 완화) 농장점검 및 예방적 살처분 제외,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 완화 등

□ (제도 도입) 현장여건 및 축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제도인 산란계 방역유형부여 제도를 우선 활용하고, 단계적 확산 추진

* 단계별 확대계획: ('25) 기존 산란계 유형부여 농장 시범적용 → ('26) 대규모 양돈 농장 추가 → ('27) 10만수 이상 가금농장, 종돈장 추가 → ('28) 가금·돼지·소 농장

○ 민·관·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축종별 방역 우수 축사모델 개발*, 객관적인 평가지표** 마련 등 평가 시스템 구축('25)

* 축사유형별 적정 방역시설·장비, 방역활동(소독, 백신), 사양·청소 관리(사료, 분뇨) 등

** (예시) 외부울타리 높이 1.5m 1점, 1.8m 2점 / U자형 소독기 3점, 터널식 소독기 5점 등

○ 산란계 방역유형부여제도에 지수·등급화된 지표 시범 적용 추진('25.하)

* (현행) 합격, 불합격 + 과거발생 현황으로 등급부여 → (개선) 점수제로 등급 부여

○ 시범운영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유형 부여제도를 방역 등급제로 통합·확대('26)